

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신청을 위한 자가진단표

b 제주농업농촌
6차산업지원센터



Add. 제주시 첨단로 213-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F
Tel. 064)722-7914~8 | Fax. 064)722-7919
Web. www.jeju6th.kr
Facebook [제주6차산업지원센터]로 검색
Instagram @jeju6_cha
Youtube [제주6차산업지원센터]로 검색

2. 사업장 입지 지역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
가.	<input type="checkbox"/> 읍, 면 지역 또는
나.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옥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
사업장 농촌지역 입지 기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	
① 사업자등록증 내 도로명 주소로 확인 ② 「토지e음」도로명 주소 검색 ▶ http://www.eum.go.kr/web/am/amMain.jsp	
참고 자료	<p>농촌지역 입지여부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 5. "농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가. 읍·면의 지역 나. 가옥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▼</p> <p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녹지지역 나.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 다.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 3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(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</p>

4. 사업 성과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 등 국세청 신고된 매출증빙자료 (통장내역, 농협거래내역서 등)	
참고 자료	<p>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43백만원' 달성 및 증빙 -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3백만원(산출 근거: '19년 41,182천원, '20년 45,029) 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선정 ※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</p>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 근로자 →	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
상시(유급) 근로자 :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,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	
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 근로자 →	임시근로자 근로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
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: 연간 근무시간 누계 1,920시간(12개월×20일/월×8시간/일)을 1명으로 계산 (예시)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,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,500시간(10명×5개월×10일/월×5시간/일=2,500시간), 인원으로 환산 시 1.3명(2,500시간/1,920시간=1.3명)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관리대장	
<input type="checkbox"/> (임대의 경우) 임대차 계약서 *법인 또는 이사 등 관계자와 별개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며 임대 기간이 인증기간(3년)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야 함	

1. 대상주체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	
가.	대상주체 해당 구분 (이중 택 1)	해당 구분에 따른 증빙자료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	→ 농업경영체 증명서(농산물품질관리원)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 관련 소상공인	→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)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 관련 중소기업	→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)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	→ 사회적기업인증서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	→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 관련 1인창조기업	→ k-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처
나.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(법인의 경우) 또는	
	<input type="checkbox"/>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)	
★ 농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		

참고 자료	<p>「농업 관련」 1)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내 「농업 관련」증빙 확인을 위해 「농업 관련」내용의 경영체 정관 설립 목적 또는 사업내용 확인 2) 법인이 아닌 경우(단체 등)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확인 3) 법인인 단체 등 아닌, 개인의 경우 농업인만 신청가능하며 농업경영체증명서 확인</p>
-------	---

3.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
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생산 →	<p>① 자가생산증명서 ② 농업경영체확인서 ③ 농지 사진 등</p>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재배 →	<p>①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② 농업경영체확인서 ③ 거래내역확인서(전자세금계산서 등) ④ 원산지 증명서</p>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매입 →	<p>① 매입증명서 ② 농업경영체확인서 ③ 거래내역확인서(전자세금계산서 등) ④ 원산지 증명서</p>
참고 자료	<p>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,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·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·도와 접해있는 시·군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</p>

5. 기타

인증 요건 관련 자가진단표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에 한함)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	
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빙서류 등 - 최근 3년(2022년, 2021년, 2020년)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량평가 교육이수증(중앙·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, 수료증 등), (대표자 또는 경영주)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점 예비인증자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점 귀농·귀촌(귀농인 확인서)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점 신상품 개발(상품개발 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) 또는 특허출원(특허증 등)	
<input type="checkbox"/> 인·허가, 정부지원 사항 등	

※ 사업자의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코칭 신청 ☎ 문의전화 064-722-7916